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92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성흠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성준, 김원태,  
박승진, 박철성, 송도호,  
왕정순, 유정희, 임규호,  
최민규, 홍국표 의원(11  
명)

## 1. 제안이유

- 최근 자전거 이용이 생활 교통수단으로 확산되면서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용 질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자전거 주차 수요 증가에 비해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기준, 위치 선정, 규모 등에 대한 정비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별 설치 수준과 관리 기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자전거 이용자의 기본적인 이용 원칙을 조례에 명시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지침 마련의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나.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기준, 위치 선정, 규모 및 유지관리기준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지침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4호 신설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기준, 위치 선정, 규모 및 유지관리기준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 ⑤ (생략)  <u>&lt;신설&gt;</u></p>	<p>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전거이용 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  <u>&lt;신설&gt;</u></p> <p>4. (생략)</p>	<p>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          -----          -----          -----.</p> <p>1. ~ 3. (현행과 같음)  <u>4.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기준, 위치 선정, 규모 및 유지관리기준</u>          5. (현행 제4호와 같음)</p>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기본적인 이용 원칙을 조례에 명시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지침 마련의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기준, 위치 선정, 규모 및 유지관리 기준 신설 조항은 통상적으로 기존 조례에 따라 주기적·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sup>1)</sup>에 일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권 봉 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서울시 보행자전거과, 2021. 12.)